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19일, 한지아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9.23.)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5.9.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지아의원)

코로나19 대유행을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감염병의 해외 유입을 최초 인지하고 대응하는 검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유관 부처 간 방역조치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을 확인함.

이에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법」 내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검역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역관리지역 지정 등 검역정책 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검역법」 내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법제화하여 향후 신종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을 대비한 외국인의 입국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의2 신설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개정안은 신종 감염병 등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검역부문의 체계화와 함께 그 중요성과 전문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검역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의미를 클 것으로, 검역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다음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 금번 개정 내용은 신종 감염병 등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입국 제한, 항공편 조정 등 관계 행정기관 간 초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참고로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14개 관계부처 참여)를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운영하면서, 항공 정기편 인가 및 항공편 일시 중단 등 항공편 조정 협의, 방역강화국가 지정 등의 조치사항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도 있음.

다만, 외국인의 입국제한이나 항공편 조정에 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으로써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은 권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심의가 아닌 협의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고, 협의회의 위원 수 등 그 구성 등과 관련하여서도 법률에서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음.

그 외, 명칭과 관련하여 해외유입 상황평가회의로 기존에 사용한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는 등 일부 자구 수정이 있어야 하겠음.

검역법 체계와 개정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제2장 검역조사에서 규정하기 보다는 제1장 총칙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14조(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및 해제)는 제5조의2로, 안 제14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는 제5조의3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검역관리위원회를 「검역법」에 신설하려는 것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검역 전문위원회 등 12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감염병 총괄 대응을 위하여 현 체계를 유지하고,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회 제도화 필요성에 대하여 기구 명칭을 기존에 사용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로 하며 기구의 성격을 협의기구가 되도록 하고 자구를 정비하는 등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붙임] 1.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검역전문위원회를 검역관리위원회로 격상하여 신설하려는 것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두고 검역 전문위원회 등 12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감염병 총괄 대응 능력이 저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하고, 신설하는 해외유입상황평가협의체 명칭은 이전 운영 명칭인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로 하며 그 기구의 성격이 협의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를 협의로 하는 등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제1항 중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위원회”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안 제5조를 삭제한다.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 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쳐 검역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제5조에 따른 검역관리위원회----- ----- ----- ----- ----- ----- ----- ----- ----- ----- ----- ----- -----	제4조의2(검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 검역전문위원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설치한 검역 분야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 ----- ----- ----- ----- ----- ----- ----- ----- ----- ----- -----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신설>	제5조(검역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	<삭제>

	<u>하여 질병관리청에</u> <u>검역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u> <u>한다)를 둔다.</u> <u>1. 검역관리 기본계</u> <u>획의 수립에 관한</u> <u>사항</u> <u>2. 검역관리지역 및</u> <u>중점검역관리지역</u> <u>(이하 “검역관리</u> <u>지역등”이라 한</u> <u>다)의 지정 및 해</u> <u>제에 관한 사항</u> <u>3. 그 밖에 검역과</u> <u>관련하여 위원장</u> <u>이 필요하다고 인</u> <u>정하는 사항</u> <u>② 관리위원회의 구</u> <u>성·운영 등에 관하</u> <u>여 필요한 사항은 대</u> <u>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조(검역관리지역등</u> <u>의 지정 및 해제) ①</u> <u>질병관리청장은 검</u> <u>역전문위원회의 심</u> <u>의를 거쳐 검역관리</u>	<u>제14조(검역관리지역</u> <u>등의 지정 및 해제)</u> <u>① -----</u> <u>관리위원회-----</u> <u>-----제12조</u>	<u>제5조(검역관리지역등</u> <u>의 지정 및 해제)</u> <u>① 질병관리청장은</u> <u>검역전문위원회의</u> <u>심의를 거쳐 검역관</u>

<u>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u> ② (생략)	<u>제1항제2호의 검역조사 수행을 위하여 검역관리지역등-----</u>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이하 “검역관리지역등”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u> ② (개정안과 같음) <u>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u> <u>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u>
---	--	---

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
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
양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
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서 규정한 사항 외
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삭 제>

제14조의2(해외유입상
황평가협의회)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
염병에 관하여 「재
난 및 안전관리 기
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관심 이상
의 위기경보가 발령
되거나 위원장이 필

	<u>요하다고 인정하는</u> <u>경우 다음 각 호의</u> <u>사항을 심의하기 위</u> <u>하여 해외유입상황</u> <u>평가협의회(이하</u> <u>“상황평가협의회”라</u> <u>한다)를 소집할 수</u> <u>있다.</u> <u>1. 외국인의 입국제</u> <u>한, 항공편 조정</u> <u>등 관계 행정기관</u> <u>간 업무협조에 관</u> <u>한 사항</u> <u>2. 그 밖에 위원장이</u> <u>필요하다고 인정</u> <u>하는 사항</u> <u>② 상황평가협의회</u> <u>의 구성·운영에 관</u> <u>하여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	--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 정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외국인의 입국제한
2. 운송수단 운영
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2(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u> <u>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관심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 재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이하 이 조에서 “상황평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u> <u>② 상황평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u> <u>1. 외국인의 입국제한</u> <u>2. 운송수단 운영</u> <u>3.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등 상황평가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황평가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